

의안번호	제 523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352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3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22일

발 의 자 : 이숙애, 정영수, 이종욱
윤홍창, 임헌경, 최광옥
장선배 의원(7인)

1. 제정이유

충청북도 교육복지정책과 운영의 체계화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보장과 폭넓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북의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매년 교육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육복지 사업과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라. 교육복지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매년 교육복지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3조)

사. 교육복지사업 증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헌법」 제31조, 제34조
- 「교육기본법」 제27조
- 「유아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나. 비용추계서 :

다. 관계부서 협의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학생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6. 11. 2. ~ 2016. 11. 21.(20일간)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요소들을 해소하고 생애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다면적인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사업의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교·가정·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의 교육복지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복지사업) 교육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유아·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4. 학교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5. 학생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6. 다문화, 북한이탈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교복지원, 취약계층 여학생 위생용품지원 사업

8.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감액 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3. 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 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1. 학습부진아동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동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慮)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8.2.>

1.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동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10.3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운영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운영비(안 제12조제4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5년(2017년 ~ 2021년)
-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 6,315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조례안 제정 시 추가 소요예산>

(단위:명,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실태조사 용역	61,750	30,875	0	0	30,875	0
운영평가 용역	154,375	30,875	30,875	30,875	30,875	30,875
위원회 운영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계	223,125	63,150	32,275	32,275	63,150	32,27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실태조사 및 평가 용역: 붙임1 참고
- 위원회 운영: 외부위원(5명)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5. 작성자 : 교육복지과 학생복지담당사무관 이주순(043-290-2591)

[붙임 1]

< 외부 용역시 예상 소요액 >

□ 외부 용역 내용

구분	실시주기	용역기간	참가 연구원	비고
실태조사	3년	2월	4명	
사업평가	1년	2월	4명	

□ 외부 용역 시 년도별 예상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실태조사	30,875	-	-	30,875	-	61,750
평가실시	30,875	30,875	30,875	30,875	30,875	154,375
합계	61,750	30,875	30,875	61,750	30,875	216,1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안전행정부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함

※ 연구원 인건비는 2016년 기준으로 작성(기획재정부 고시 준용)

※ 용역비 세부 내역 : “별첨” 참조

[별첨]

< 용역비 세부 내역 >

□ 사업명 : 교육복지 사업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 용역

(단위 : 원)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3,079,435		1월
	연구원	4,722,536		2월
	연구보조원	3,156,858		2월
	보조원	1,183,862		1월
	소 계	12,142,691	39%	
② 경 비	유인물비	3,000,000		중간, 최종보고, 설문지 등
	전산처리비	1,000,000		
	용역재료비	0		
	임차료	0		
	교통통신비	0		등
	일용직인건비	11,925,000		설문요원 (53,000원*15명 *15일)
	소계	15,925,000	51%	
③ 총용역원가	28,067,691	90%	(①+②)	
④ 부가가치세	2,806,769	10%	③×10%	
⑤ 합계	30,874,460	100.00%	(③+④)	